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관할하에서 한국 기독교 교역자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한신대학교
2. 영생고등학교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에 둔다.

〈개정 2013. 5. 20.〉

제5조 (정관의 변경)

- 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3. 5. 20.〉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0.〉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8. 1. 11.>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개정 2022. 5. 26.>

제10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산 결산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4조 (임원의 자격과 종류 및 구성)

이 법인에서 임원의 자격과 정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 1. 11.〉

- ① 임원의 자격은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하되 이사회 추천이사 중 재정기여 이사는 세례교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인회계사인 감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10. 15., 2011. 10. 24., 2014. 7. 3., 2022. 5. 26.〉

- ②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7인 [이사회 추천이사 2인(재정기여 이사 1인, 여성이사 1인), 이사장 포함]

〈개정 2017. 8. 23., 2017. 10. 23., 2019. 3. 14., 2019. 10. 28., 2019. 11. 14., 2020. 3. 26., 2020. 6. 29., 2022. 12. 5., 2024. 4. 26., 2024. 12. 19., 2025. 2. 27.〉

2) 감사 2인

③ 이사의 구성은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8. 23., 2017. 10. 23.〉

제15조 (개방이사와 감사의 자격 및 선임)

① 개방이사는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개정 2008. 10. 15.〉

② 삭제 〈2008. 1. 11.〉

③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나 개방감사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1.〉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 2배수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8. 1. 11.〉

⑤ 이사회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 중 소요정수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8. 1. 11., 2016. 3. 4., 2016. 8. 5. 2022. 5. 26.〉

⑥ 삭제 〈2008. 1. 11.〉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신설 2020. 11. 30.〉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장이었던 사람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단, 개방이사와 개방감사는 예외로 한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2016. 3. 4., 2016. 8. 5., 2021. 8. 26., 2022. 5. 26.〉
- ② 임기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는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총회가 추천한 임원이 이사로 재임 중 추천근거지 노회로부터 타 노회로 이명 전출 시에는 전 노회 소속교회 사무를 사임한 날로부터 본 이사회 임원직도 자동 사임한 것으로 한다.
- ⑥ 삭제 〈2008. 1. 11.〉
- ⑦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제18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로 하며,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에 준용한다. 〈개정 2008. 1. 11.〉
-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⑦ 1. 〈개정 2022. 5. 26.〉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② 1. <개정 2022. 5. 26.>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② 1. <개정 2022. 5. 26.>

제19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개정 2025. 2. 27.>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의 임기가 이사 임기를 도과할 시 이
사장의 잔여 임기만큼 이사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2024. 4. 26., 2025. 2. 27.>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④ 이사장의 선임은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
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한다.

제21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2. 5. 26.>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3조 (임원의 겸직 금지)

-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의 구성 및 기능)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3. 29.>
 1.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와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이사장 1인, 서기 1인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및 이사회가 구성하는 모든 위원회는 이사 및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 및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7. 3., 개정 2022. 5. 26., 2024.12.19.〉

제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의견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이사장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29조 (이사회 회의록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30.>
-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1.>

제4장 수익사업

제30조 (수익사업의 종류)

1. 부동산 임대업
2. 조림사업
3. 부대사업
4. 교육사업 <개정 2021. 3. 29.>

제31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신영림을 경영한다.
<개정 2021. 3. 29., 2024.12.19.>

제32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0조의 수익사업체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0., 2021. 3. 29.>

1. 한신영림 : • 경남 거제시 아주동
 - 경남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제33조 (관리인)

- ① 제30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15.>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8. 10. 15.>

제36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0. 15.>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제37조 (기본 자격과 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다만, 기독교

교 정신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4. 26.>

- ②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③ 총장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1. 3. 29., 2022. 5. 26., 2024. 4. 26.>
- ④ 한신대학교 총장과 영생고등학교 교장의 선임은 인사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개정 2021. 3. 29., 2022. 5. 26.>
- ⑤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계약조건은 본인의 동의와 대학의 장의 제청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0., 2015. 8. 6.>

1. 근무기간

-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다. 조교수 : 4년 이내의 기간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정관 제47조로 정하는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 시간 및 소속학과(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수업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⑦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14. 7. 3.>
- ⑧ 고등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임용한 뒤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2. 5. 26.>
- ⑨ 제2항과 제6항 및 제8항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경우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신학대학원장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교육경험이 있는 자

라야 한다. <개정 2008. 10. 15.>

- ⑪ 신학대학원장은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8. 10. 15., 2022. 5. 26., 2024. 4. 26., 2024. 12. 19.>

- ⑫ 신학대학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제로 하고, 정년은 교원 정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 10. 15., 2024. 4. 26., 2024. 12. 19.>

- ⑬ 이사회에서 선임된 신학대학원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10. 15.>

- ⑭ 본교의 교원으로서, 총장에 취임하는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취임 전 소속학과와 교원으로 복귀한다. <개정 2008. 10. 15.>

- ⑮ 본교의 교원으로서 교장에 취임한 자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고등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 ⑯ 위 1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24. 12. 19.>

제38조 (정년)

- ① 교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외의 대학 교원 65세
2. 고등학교 교원 62세

- ② 교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38조의2 (교원정원관리) <삭제 2018. 12. 14.>

제39조 (기간제교원)

-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 (명예퇴직 및 수당)

- ① 고등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수당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 수당지급일, 수당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한다.
- ③ 대학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1조 (강사, 겸임, 초빙 교원)

- ① 대학교육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37조 제6항의 교원 이외의 강사, 겸임, 초빙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2024. 4. 26.〉
- ② 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정년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2024. 4. 26.〉

제2관 신분보장

제42조 (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0. 24.〉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전신,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0. 24.〉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개정 2022. 5. 26.>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개정 2007. 1. 11., 2013. 5. 20.>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22. 5. 26.>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개정 2008. 10. 15., 2022. 5. 26.>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설 2018. 2. 13., 2018. 5. 14.>

제43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6.>
2. 제4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5.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6. 제42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으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2015. 8. 6., 2019. 6. 28.>

7. 제4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8. 6.>
8. 제4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30.>
9. 제4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8. 6.>
10.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11. 제4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 2. 13.>

제44조 (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2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④ 제42조 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2. 5. 26.>

제45조 (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 1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 11., 2022. 5. 26.>
- ②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이 출산을 사유로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90일에 대하여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제4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급여지급 여부는 단협에 따른다. <신설 2022. 5. 26., 개정 2022. 12. 5.>

제46조 (직위의 해제)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20. 6.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 제1항 2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29., 2022. 5. 26.>
-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20. 6. 2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제46조의2 (면직의 사유)

-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6. 2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7. 삭제 <2025. 2. 27.>
-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신설 2020. 6. 29.; 개정 2024. 12. 19., 2025. 2. 27.>

제47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와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④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49조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5. 20., 2014. 11. 2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등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경우에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3.>
 3.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등학교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6. 고등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외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건학이념의 준수와 근무태도 <신설 2022. 5. 26.>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무혁신처장이 위원장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들 중 호선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집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6조 (인사위원회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4. 7. 3., 2022. 5. 26.>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4인, 해당 학교 교원 3인, 외부위원 2인 (단,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 포함)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5. 26.>
- ③ 해당 학교의 장이 징계를 제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위원 3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5. 26.>
- ④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성화릉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

제63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사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5. 26.〉
- ④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 ⑥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성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 ①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교원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4. 7. 3., 2015. 10. 12., 2015. 11. 24.〉
- ② 감사원의 조사 또는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해당 기관의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11. 24.〉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4.〉

제68조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 7. 3., 2015. 10. 12.〉

제6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제70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 (자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직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④ 재직중에 일반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2조 (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속승진은 고등학교에 한하며, 근속승진제운영, 대우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3. 5. 20., 2022. 5. 2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3조 (명예퇴직 및 수당)

- ① 법인 및 대학의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수당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과 총장이 별도로 정하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 10. 9., 2019. 6. 28.>
- ② 근속기간은 제72조 1항에 따른 전보발령의 법인 및 각급 학교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9. 6. 28.>
- ③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시기, 수당지급액 등 기타 필요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9. 10. 9.>

제73조2 (공로연수)

- ① 고등학교 사무직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8.>
- ② 공로연수에 필요한 재원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준용한다. <신설 2019. 6. 28.>

제74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직원보수 규정으로 정한다.

제76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2 (준용사항)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0., 2019. 6. 28.>

제77조 (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음 각 호는 달리한다. <개정 2024. 12. 19.>
 1.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3인, 교원 1인, 직원 3인, 외부위원 2인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2. 대학교의 장은 징계를 제청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 1인과 직원 3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3. 고등학교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 이사 3인, 교원 2인, 직원 2인, 외부위원 2인(학부모위원 1인 포함)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고등학교의 장은 징계를 제청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원 2인과 직원 2인, 학부모위원 1인의 명단도 같이 보내야 한다.
 5. 특정 성(性)의 비율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19.>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8조 (법인 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5. 26.>
- ② 법인사무국에 사무과와 관리과를 둘 수 있으며, 국장과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이 법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둔다.
- ④ 사업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⑤ 사업부에는 관리과를 두며 과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의2 (한국학연구원) 삭제 <2024. 12. 19.>

제2절 대학교

제79조 (총장 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복수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 ④ 총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긴급한 경우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혁신처장, 사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9., 2020. 11. 30.>

제80조 (학장, 대학원장)

-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81조 (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목실, 총장실(비서팀, 대외협력센터), 감사실, 인권센터, 미래혁신전략위원회, 미래혁신본부, 기획처, 사무처, 교무혁신처, 학생지원처, 입학·홍보본부, 서울캠퍼스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1. 10. 24., 2014. 7. 3., 2014. 10. 30., 2015. 3. 12., 2017. 6. 9., 2018. 1. 4., 2018. 5. 14., 2019. 3. 26., 2019. 3. 26., 2020. 11. 30., 2021. 3. 29., 2022.

3. 31., 2022. 12. 5., 2024. 4. 4., 2024. 12. 19.)
- ② 각 처의 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1급(30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사무부서에는 실장, 부처장,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4. 16., 2015. 3. 12., 2016. 3. 31., 2019. 10. 28., 2020. 11. 30., 2021. 3. 29., 2022. 5. 26., 2022. 12. 5., 2023. 1.16., 2024. 4. 4.〉
- ③ 기획처에는 기획예산팀, 혁신성과평가팀, 정보시스템팀, AI빅데이터센터, IR센터, 디지털새싹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 10. 24., 2013. 5. 20., 2015. 3. 12., 2018. 12. 14., 2019. 3. 26., 2020. 11. 30., 2022. 3. 31., 2023. 1. 16., 2024. 4. 4., 2024. 4. 26., 2024. 12. 19.〉
- ④ 사무처에는 총무팀, 재무팀, 시설자산팀, 그린캠퍼스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1. 10. 24., 2018. 12. 14., 2020. 11. 30., 2022. 3. 31., 2022. 12. 5., 2023. 1. 16., 2024. 4. 4.〉
- ⑤ 교무혁신처에는 교무팀, 대학행정팀, 교수연구팀, 교육혁신원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1. 10. 24., 2015. 3. 12., 2017. 2. 6., 2020. 11. 30., 2022. 3. 31., 2023. 1.16., 2024. 4. 4.〉
- ⑥ 학생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생활관[경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진로 취업지원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IPP형일학습병행사업단, RnD산업인턴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1. 10. 24., 2015. 3. 12., 2017. 2. 6., 2017. 6. 9., 2018. 1. 4., 2020. 11. 30., 2021. 3. 29., 2022. 3. 31., 2023. 1.16., 2024. 4. 4., 2024. 12. 19.〉
- ⑦ 입학·홍보본부에는 입학인재발굴팀, 브랜드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0. 4. 16., 2015. 3. 12., 2019. 3. 26., 2020. 11. 30., 2022. 3. 31., 2023. 1.16., 2024. 4. 4.〉
- ⑧ 삭제 〈2015. 3. 12.〉
- ⑨ 제1항의 부서에는 팀장의 보직을 둔다. 〈개정 2020. 11. 30., 2022. 3. 31.〉
- ⑩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9., 2022. 12. 5.〉
- ⑪ 삭제 〈202. 4. 4.〉
- ⑫ 삭제 〈202. 4. 4.〉
- ⑬ 서울캠퍼스 행정처에는 사무행정팀, 교역지도실, 국제교류협력실, 생활관[서원을 둔

다. <신설 2022. 12. 5., 개정 2023. 1. 16., 2024. 4. 4.>

- ⑭ 미래혁신본부에는 대학혁신추진단, RISE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을 둔다.
<신설 2024. 12. 19.>

제82조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 단장에는 교수 또는 1급(30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 ③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 및 분장업무는 따로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 ④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 (대학원의 하부조직)

- ① 대학원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직제규정으로 정하며 팀장의 보직을 둔다. <개정 2020. 11. 30., 2022. 3. 31.>
- ② 교학부장을 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부서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11. 30.>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 (부속시설)

-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 (종합학술정보원) <삭제 2022. 12. 5.>

제86조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교육행정 5급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제4절 정 원

제88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2, 3과 같다.

제8장 대학평의위원회

제89조 (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5. 26.>

제90조 (평의위원회의 구성)

-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1., 2015. 3. 12., 2018. 2. 13., 2020. 11. 30., 2022. 5. 26.>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신설 2020. 11. 30.>

4. 학생 2인 <개정 2018. 2. 13.>
5. 동문 1인 <신설 2022. 5. 26.>
6.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4인
<개정 2015. 3. 12., 2018. 2. 13., 2022. 5. 26.>
7. 삭제 <2015. 3. 12.>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30.>

제91조 (교내 평의원회의 위촉)

- ①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2배수를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 12., 2022. 5. 26.>
- ② 제90조 제1항의 협의체의 구성단위와 자격, 추천 인원의 수와 추천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12.>

제92조 (평의원회 조직)

- ①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로 한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93조 (평의원회의 임기)

-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90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조교 및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5. 26., 2024. 4. 26.>
-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5. 3. 12., 2022. 5. 26.>

제94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8. 1. 11.>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4.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5.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 1. 11.>

제95조

삭제 <2008. 1. 11.>

제96조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2.>

제9장 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제97조 (목적)

제9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생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5.>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훈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6. 기타 학교운영 등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1. 11.>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제안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 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99조 (위원의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5. 26.>
- ③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기타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0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2. 3. 31.>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 5. 26.>

제101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02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2. 3. 31.>
3. 위원이 제101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 5. 26.>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설 2022. 3. 31.>
7. 영 제5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신설 2022. 3. 31.>

제10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6.>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 5. 26.>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결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3. 31.>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6조 (회의 및 회의 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신설 2022. 3. 31.>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7조 (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8조 (안건의 발의 및 처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09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0조 (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한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 (의견수렴 등) <신설 2022. 3. 31.>

-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자,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시행령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학생자치활동
 - 2.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3. 교복 및 체육복
 - 4. 방과후 및 방학중 교육수련활동
 - 5. 학교급식
 -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경우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2조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13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출납 방법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출납 방법 등은 감독청의 예산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제114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정 2008. 1. 11.〉

제115조 (추천위원회 구성)

-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위원회에 둔다. 〈신설 2008. 1. 11.〉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11., 2014. 10. 30.〉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신설 2014. 10. 30.〉
 2.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개정 2008. 1. 11., 2014. 10. 30.〉
 3.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개정 2008. 1. 11., 2014. 10. 30.〉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8. 1. 11.〉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1.〉

제11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1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영생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17조 (기능 등)

-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 사안을 심의, 조정, 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영생고등학교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 예우 및 교권 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분쟁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 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및 고문 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19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0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 (분쟁 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2조 (회의 개최 등)

- ① 회의는 분쟁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3조 (위원의 제적)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 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항,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 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분쟁 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6조 (운영위원회 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정관 중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27조 (운영 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128조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26.>

제129조 (청렴의무) <신설 2022. 5. 26., 개정 2022. 12. 5.>

- ①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이사장, 임원 및 소속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임원 및 교직원”이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가.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 나.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원 및 교직원이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임원 및 교직원이 제2항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31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제13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6., 2022. 12. 5.>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이사장	진 정 울	1890. 1. 23	경남 장승포읍 아주리 592
이 사	송 창 근	1898. 10. 5	서울 중구 도동1가 132-10
"	함 태 영	1873. 10. 22	서울 중구 도동1가 139-29
"	김 영 철	1898. 10. 27	서울 종로구 혜화동 53
"	진 명 식	1896. 3. 10	경남 장승포읍 옥포리 583
"	김 영 주	1884. 9. 8	서울 종로구 서대문로1가 43
"	김 종 대	1908. 12. 1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5
"	이 자 익	1879. 7. 25	전북 금산군 금산읍 위안리 44
"	김 춘 배	1900. 1. 7	서울 동대문구 돈암동 153-70
"	김 승 아	1896. 8. 18	경북 금천군 김천읍 황금동 81
"	신 애 균	1900. 10. 10	서울 성동구 신당동 333-54
"	이 창 규	1886. 1. 17	전북 군산군 구암동 328

부 칙

① (처음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9장 영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최초의 회의소집)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4조 (시행규정)

본 학교운영위원회 내부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6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감사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2항의 현직 감사 임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수 승진 경과조치) 제37조 제6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정관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육아휴직, 42조 7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정관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정관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⑧ 이 정관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⑩ 이 정관은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 ⑪ 이 정관은 2014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결의)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방이사추천위원구성경과조치) 제115조 제2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개정된 정관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4. 11. 21.)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7조 제6항의 개정 조항은 2015년 8월 6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경과조치) 제15조 제5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조항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7년 10월 31일까지 이 정관의 개정에 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관 개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1조 1항 및 2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 2항은 교육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5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월 16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4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4월 26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2월 19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2월 27일 의결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1급	2명
2급	2명
3급	2명
4급	1명
5급	1명

〈개정 2022. 5. 26.〉

[별표 2] 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20명
일반직 계	63명
1급	5명
2급	16명
3급	20명
4급	11명
5급	11명
별정직 계	2명
3, 4급(관장, 사감)	2명
기능직 계	25명
2등급	5명
3등급	5명
4등급	5명
5등급	6명
6등급	4명
경노무 고용원 계	9명
조리원	2명
청소원	7명

[별표 3] 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8명
행정직 계	5명
교육행정 5급	1명
교육행정 6급	명
교육행정 7급	1명
교육행정 8급	1명
교육행정 9급	1명
관리운영직 계	1명
사무운영 9급	1명
기술직 계	2명
시설관리 9급	2명

〈개정 2014. 7. 3., 2021. 8. 26.〉

[별표 4-1]

〈삭제〉

[별표 4-2]

〈삭제〉